

제 호

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

기 관 명:

대 표 자:

소 재 지:
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직인